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12. 1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11월 13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7.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춘은)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영등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이 연장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 구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의 축소 (안 제5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조항 삭제(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목)

- 본 기금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 연장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임.
 -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제2항 규정을 반영하여, 안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제3항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의 주요항목 변경이 가능한 지출금액의 범위를 10분의 5이하에서 10분의 2이하로 축소하였으며,
 -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6조제4항 규정을 삭제하였음.
-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과 체육시설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89 호
----------	---------

제출연월일 : 2017.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영등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이 연장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의 생활체육활성화와 체육진흥을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내실있게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나. 구 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의 축소
(안 제5조)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기금 예탁 조항 삭제(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7.9.28. ~ 10.18.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5”를 “2”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17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② (생략)</p> <p>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① ~ ③ (생략)</p> <p>④기금의 여유자금을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u> 예탁할 수 있다.</p>	<p>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u>2022년 12월 31일</u> ----- . ----- ----- ----- ----- .</p> <p>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u>2</u> ----- ----- .</p> <p>제6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